

# 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



건설환경소방위원회  
전문위원 노형우

##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의자 : 황 규 철 의원 등 7인

2. 발의 및 회부일자

가. 발의일자 : 2021년 4월 13일

나. 회부일자 : 2021년 4월 16일

3. 제안이유

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 및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함.(안 제1조, 안 제2조)

나.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.(안 제3조)

다.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)

라.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, 용도, 의무사용량을 규정함.  
(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)

마. 순환골재 품질기준 및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  
(안 제8조, 안 제9조)

5. 검토내용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충청북도 도내 건설공사에 순환골재 등의 사용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상위법령인 「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충청도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재활용 등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과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목적 및 필요성이 인정됨.

- 조문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.
- 안 제3조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한 도지사의 의무를 규정함.
- 안 제4조는 순환골재 사용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,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순환골재 의무사용건설공사의 범위, 용도, 의무사용량을 규정함.
- 안 제8조 및 안 제8조에서는 순환골재 등의 품질기준 및 사용실적 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9조는 순환골재 활용 촉진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포상 사항을 규정함.

- 기타 조문은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- 입법예고('21. 4. 2. ~ '21. 4. 8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- 관련부서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주요내용을 검토한 결과 “수용” 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 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은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## 6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순환골재 등의 활용 및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설공사에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와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순환골재 등의 활용 촉진 및 자원순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